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』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 12. 17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◇ 공고기간 : 2019. 12. 17 ~ 2019. 12. 30(14일간)

◇ 공고내용

1.공고명칭	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				
2.당 사 자	성 명	윤○석	생년월일	690909-*****	
	주 소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25-**, ***호(우만동)			
3.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				
4.대상부동산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7-1, 301동 ***호				
5.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(43,500,000원)				
6.법 적 근 거	-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(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)				
7.의 견 제 출	제출처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부서명	토지정보과
		주소	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299(심곡동) 서구청 토지정보과 (☎032-560-4814)		
		FAX	032-560-2786		
	제출기한		2019년 12월 30일까지		